

---

# 2016년 수원과학대학교 자체평가 결과 요약보고서

---



# 목 차

<b>1. 자체평가의 목적</b> .....	<b>1</b>
<b>2. 자체평가의 추진</b> .....	<b>2</b>
가. 조직 및 추진절차 .....	2
나. 평가범위와 지표 .....	5
<b>3. 평가결과</b> .....	<b>8</b>
가. 기준 및 평가요소별 평가결과 .....	8
나. 정량적 정성평가 평가결과 .....	24
다. 평가결과의 종합 .....	25
<b>4.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b> .....	<b>26</b>

# 1. 자체평가의 목적

대학 자체평가의 목적은 대학발전을 위한 자기진단과 점검을 통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대학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기업체 등에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기준, 정부재정지원 및 민간기업 투자대상으로서의 평가기준, 그리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장·단점을 파악하여 질적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의 평가참여를 통한 목표인식 및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학의 특성과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을 반영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평가 대상을 선택하려는 관련 수요자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수원과학대학교는 1주기(2010년) 및 2주기(2012년) 자체평가를 통하여 대학의 특성, 고유성, 및 특수성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부 역량 강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주기 자체평가에서는 대학 특성화 추진을 위한 대표 브랜드 학과 육성과 연계하여 주요 평가지표를 점검하였으며, 2주기 자체평가에서는 시대적 요구 반영에 따른 대학발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주요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수원과학대학교는 2012년 수립된 대학발전계획을 통하여 2020년 대학 비전의 달성을 위한 7대 부문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2013년 실시된 기관평가인증을 통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교육 품질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3주기(2014년) 자체평가에서는 대학발전계획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 집중 및 사업 추진으로 국제적 수준의 교육 품질 및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고, 2013년 기관평가인증의 사후적 유지 관리를 위한 자체평가-기관평가인증 연계형 평가지표를 확대하였다.

이제 4주기(2016년) 자체평가를 맞이하여 수원과학대학교는 기관인증 사후점검의 평가항목을 자체평가의 평가항목으로 같음함으로써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2013년 기관인증심사 당시의 평가항목에 대한 재점검 등을 통해 교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서비스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함으로써 인증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여 정부의 교육 정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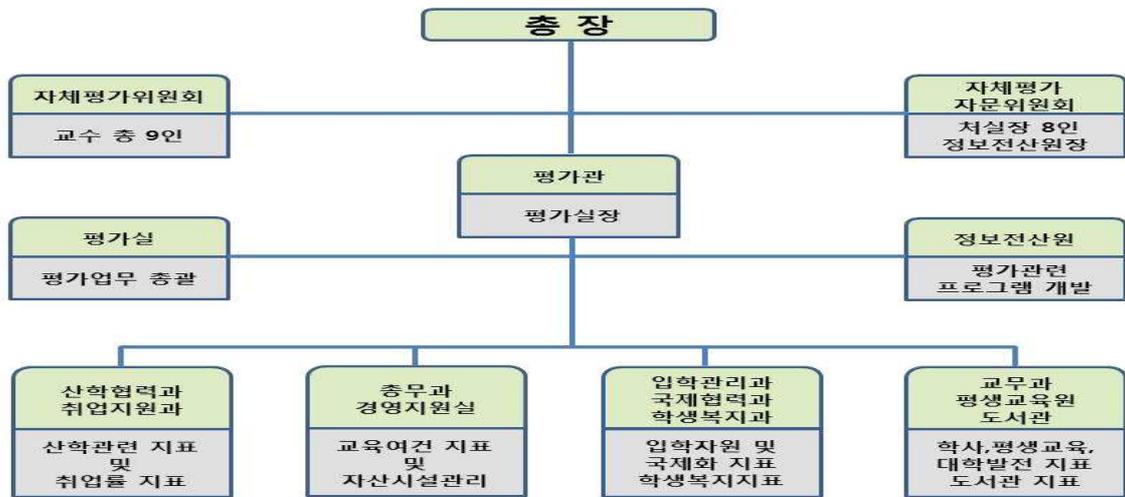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한다. 수원과학대학교는 대학발전계획의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혁신 및 체질개선을 통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경쟁력은 물론 전문기술인 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주기 자체평가의 주요 목적은 비전2020 대학발전계획의 계획대비 목표달성도를 점검함으로써 제2기 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는데 활용하고, 2016년 기관인증 사후점검대비 평가항목 점검을 위해 시행된다. 또한 교육환경과 인프라 개선 및 교육서비스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별 성과관리 체계를 정착하도록 한다.

자체평가는 대학의 비전 및 주요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표로 개발 및 점검함으로써 대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목표의 달성도 평가를 통해 비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원과학대학교는 우수한 특성화 및 국제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체평가를 통해 국제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한류문화의 세계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비전2020(제2기) 7대 추진전략을 실현하고자 한다.

## 2. 자체평가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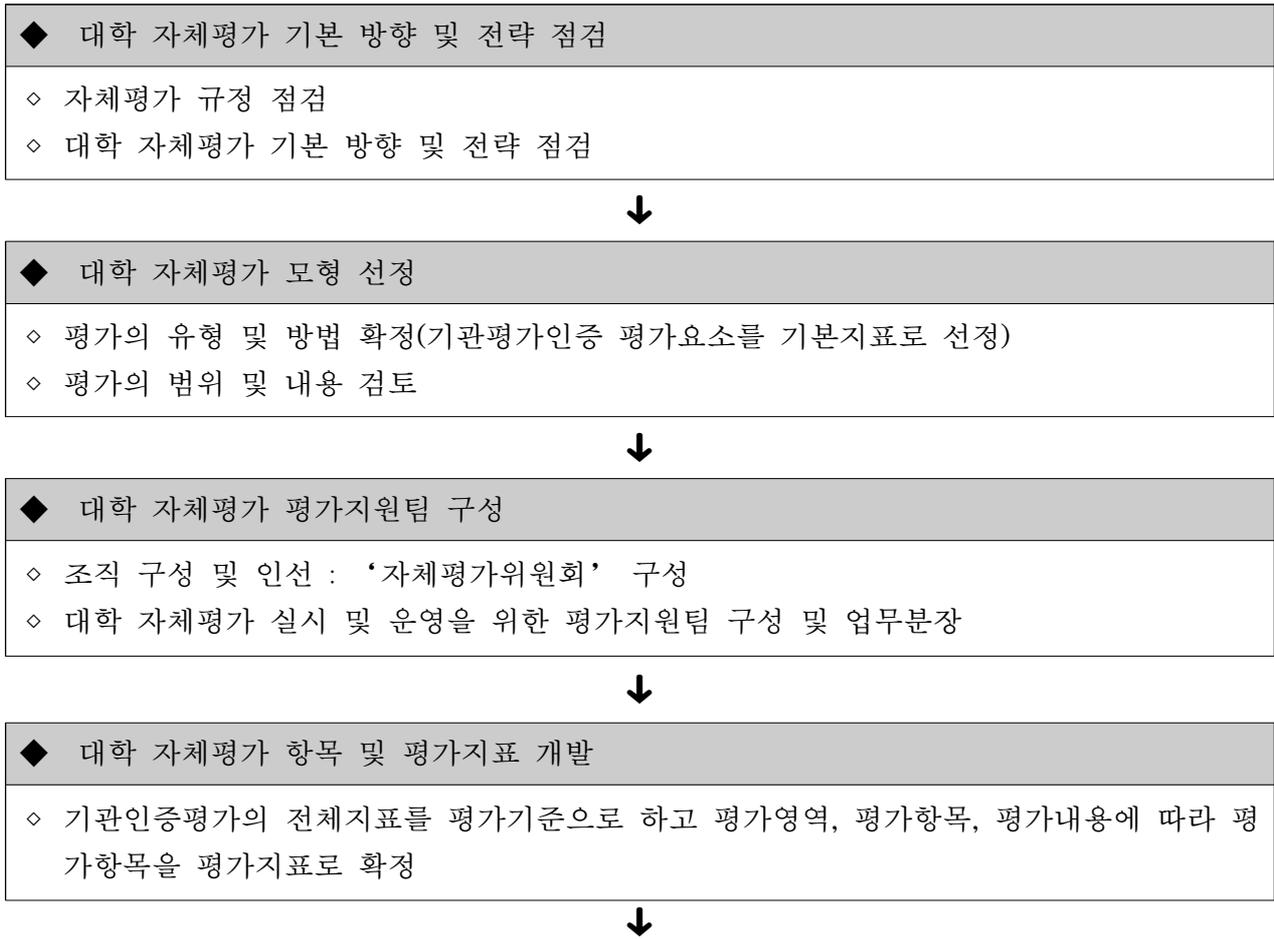
### 가. 조직 및 추진절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체평가 계획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해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수 9인으로 구성, 평가계획의 수립과 범위의 선정 및 지표 개발, 자료 분석,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모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평가범위와 지표, 자료검증 등 공정한 진행을 위해 구성된 자체평가자문위원회는 처실장 8인으로 구성, 전반적인 자문과 심의를 담당한다[그림 1]



[그림 1] 자체평가 조직도

자체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본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그림 2].



<b>◆ 대학 자체평가 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자체평가 실시 및 자료 결과 분석</li> <li>◇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확정</li> </ul>



<b>◆ 대학 자체평가 결과 발표 및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자체평가 결과 대내외 공개 및 공유</li> <li>◇ 개선 실태 점검 등 지속적인 질 관리 실시</li> </ul>

[그림 2] 자체평가 추진절차

자체평가는 다음과 같은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한다<표 1>.

<표 1> 세부 추진 일정

일자	추진부서 및 회의 일정	추진 내역
2016. 1. 13	평가실	자체평가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 평가규정 및 전략 점검
2016. 1. 27	평가관	자체평가 모형 선정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조직개편
2016. 2. 24	자체평가위원회 1차 회의	자체평가 실시 및 운영을 위한 자체평가위원 업무분장
2016. 3. 16	자체평가위원회 2차 회의	대학 자체평가의 기본 방향 및 전략을 점검하여 평가 항목 및 지표 개발
2016. 3. 30	자체평가위원회 3차 회의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에 따라 평가지표 확정
2016. 4. 13	자체평가위원회 4차 회의	평가 기준 및 평가 내용의 주요 고려사항을 확인하여 개발된 평가지표와 관련한 증빙자료 수집
2016. 5. 25	자체평가위원회 5차 회의	자체평가 실시 각종 규정, 지침, 공문, 회의록 등의 자료 보완
2016. 6. 29	자체평가위원회 6차 회의	평가 결과 분석 및 점검
2016. 7. 4	자체평가위원회 7차 회의	자체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및 지속적인 검토 보완
2016. 7. 8	자체평가위원회 8차 회의	자체평가보고서 점검 및 확정
2016. 7. 12	자체평가보고서 총장에게 제출	경영진에 평가결과 보고 및 차기사업계획에 반영
2016. 11	자체평가보고서 관련 기관 제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출 및 대학 자체평가의 목적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수립
2016. 11	평가결과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에 반영	학교홈페이지 공시 및 개선 실태 점검 등 지속적인 질 관리 실시

## 나. 평가범위와 지표

우리대학은 학교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공시정보와 대학의 대학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학 자체평가의 평가범위 및 영역을 정한다. 대학의 자체평가의 평가지표 선정과정과 절차는 매 주기별 여건과 환경적 특수성 및 자체평가 목표를 고려하여 평가모형을 설정한다. 이러한 평가모형에 기초하여 정보 공시항목, 평가·인증 기준, 대학발전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한다.

2016년 4주기 자체평가에서는 대학운영 전반과 활동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기관평가인증제 편람’의 지침을 활용하여 <표 1>와 같이 9개 기준, 25개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범위와 영역이 설정되었다. 또한, 평가지표는 평가인증 62개의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47개의 정성평가 지표와 15개의 정량적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62개의 평가요소는 절대평가가 적용되며 평가요소별 판단기준에 따라 최소 요구사항의 충족여부,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표 2> 자체평가 총괄 세부기준 및 평가요소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대학사명과 발전계획	사명과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사명</li> <li>■ 대학의 교육목표</li> </ul>
	특성화 및 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수립</li> <li>■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평가</li> </ul>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질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정책</li> <li>■ 교육과정 개발</li> </ul>
	전공 및 교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전공교육</li> <li>■ 직업기초 교양 및 기초학습 교육</li> </ul>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 운영체제</li> <li>■ 학점인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관리</li> </ul>

학사관리 및 교육성과	학사관리	■ 학사관리 규정 및 준수
		■ 수업관리
		▲ 학생선발
	교육성과	▲ 학업성취도 평가
		▲ 졸업생 취업률
		■ 교육만족도
교수학습지원	▲ 재학생 충원	
	■ 교수학습 지원 체제 ■ 교수학습 지원활동 평가 및 개선	
산학협력	산학협력 교육활동	■ 산학협력활동 지원체제 ■ 산학협력활동 평가 및 개선
	취·창업지원 활동	■ 취·창업지원 체제 ■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계획과 평가
	현장실습	▲ 현장실습교육 지원체제, ■ 현장실습교육 평가 및 개선
학생 및 도서관	학생지원 및 상담	■ 학생지원체제 및 안전관리
		■ 학생자치 활동
		■ 언론활동의 보장
	■ 상담 및 대학생활 정보제공	
학생복지 지원	▲ 복지지원 ■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도서관	▲ 도서관 지원체제 ■ 도서관 지원 평가 및 개선	
교원	교원의 선발과 평가	■ 교원 임면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 교원의 확보
		■ 교원의 평가
	교원의 활동	■ 비전임 교원의 적합성
■ 교원 역량 개발 ▲ 교육 활동 ▲ 연구		
경영 및 재정	리더쉽과 행정관리	■ 대학의 조직과 운영
		■ 총장의 리더쉽
		■ 의사결정 구조
	인사 및 복지	■ 직원 인사관리
		▲ 교원 및 직원의 처우 및 복지
	재정계획과 운영관리	■ 장단기 재정운영계획
		■ 연간 예산계획 수립 및 결산
		■ 재정지원의 다양성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 교육비의 환원	
	■ 재정운영의 적절성	
	■ 감사제도	

물적·기술적 자원	물적자원 계획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적자원의 계획</li> <li>■ 물적자원의 평가 및 개선</li> </ul>
	교육 및 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및 복지시설의 확보 및 유지</li> <li>■ 정보전산시스템 지원 및 운영</li> <li>■ 정보보안 체계</li> </ul>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li> <li>■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관리</li> </ul>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대학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윤리적 책무</li> <li>■ 대학의 사회적 책무</li> </ul>
	교육품질의 지속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품질의 평가체제</li> <li>■ 교육품질의 평가 및 개선</li> </ul>
기준 9개	세부기준 25개	62개 평가요소 (■ 정성적 평가요소 47개, ▲ 정량적 정성 평가요소 15개)

우리대학의 4주기 자체평가방법은 평가인증기준을 따르며 크게 정성평가와 정량적 정성평가로 구분한다. 평가요소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표 5>의 자체평가 총괄 세부기준의 평가요소 중 정량적 정성평가는 15개이며 나머지 47개는 정성평가로 수행하며, 각각의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에 대해 ‘충족(Y)’, ‘보완(C)’, ‘미충족(N)’으로 판정한다.

9개의 기준에 대해 ‘충족’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준의 ‘평가요소’를 판정하고, 이들 평가요소로 이루어진 ‘세부기준’을 판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기준’을 판정한다.

■ “기준” 충족 판단

기본적으로 필수 평가요소를 포함한 세부기준에서 해당 필수 평가요소의 요구수준을 만족하고 기준별 모든 세부기준이 충족(Y)인 경우 충족 판정한다. 하지만, 기준별 세부기준에서 1개 이상의 보완(C) 판정인 경우는 보완 판정한다. 또한, 세부기준 중에서 1개 이상이 미충족(N) 판정인 경우 미충족 판정한다.

■ “세부기준” 충족 판단

필수 평가요소의 요구수준을 만족하면서 세부기준별 모든 평가요소가 충족(Y)인 경우 충족 판정한다. 하지만, 세부기준별 평가요소에서 1개 이상의 보완(C)판정인 경우 보완 판정한다. 또한, 세부기준별 평가요소 중에서 1개 이상이 미충족(N) 판정

인 경우 미충족 판정한다.

■ “평가요소” 충족 판단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요소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할 내용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세부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평가요소별 제시된 판단내용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충족 판정한다. 평가요소는 필수 평가요소와 일반 평가요소로 구분되며, 평가방법에 따라서는 정성평가, 정량적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단, 필수평가요소는 정량적 정성평가방법이 적용되나 반드시 정량적인 요구수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 3. 평가결과

#### 가. 기준 및 평가요소별 평가결과

##### 기준1.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세부기준	평가 및 분석결과	평가
1.1 사명과 교육목표	<p>■ 1.1.1 대학의 사명</p> <p>1. 대학의 사명의 공표 및 구성원과의 공유와 관련하여 학교규칙, 정관, 비전 선언문, 대학요람, 대학발전계획,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자료 등을 통해 자료의 문서비치 및 명문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p> <p>2. ‘인격함양, 국가발전, 인류번영’의 대학 사명과 ‘검소, 정의, 창의’의 대학 교훈은 대학 설립 후 2년 뒤인 1979년에 재정립되었으며, 1998년에 현재와 같은 교육목적체계가 수립되었으므로, 대학의 사명이 대학평의원회 관련 법령이 선포되기 전에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학 평의원회 자문 자료의 제시와 상관없이 충족 판정함.</p>	충족
	<p>■ 1.1.2 대학의 교육목표</p> <p>1. 대학의 구성원에게 대학 홈페이지, 대학 요람, 신입생 모집요강, 학생수첩 등의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와 교내 게시물(액자)과 교내 홍보물 등을 통하여 대학 교육목표와 사명을 공표하여 널리 공유하고 있기에, 교육목표와 사명에 대한 구성원 공유 노력이 확인됨.</p> <p>2. 최초 인증 평가 이후로 교육목표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대학평의원회 및 이사회 승인 관련 자료 제시와 관계없이 충족 판정함.</p> <p>3. 본 대학 교무처의 교무과가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추진에 관한 업무가 분장된 전담조직으로서 지정되어 있고, 교무과에서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성과평가와 추진에 대한 협의체인 교무위원회의 회의 개최와 운영을 관장하고 있으며, 교무위원회는 총장, 처장단 등이 포함된 10인으로 구성되어, 매 학기마다 회의를 열고 학기별 교육목표 추진 평가 및 다음 학기 추진과제를 협의하고 있으므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전담조직 및 해당 조직의 관련 활동이 확인됨.</p>	충족
1.2	<p>■ 1.2.1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수립</p>	충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발전위원회는 7대 부문 발전계획에서 핵심 사업별 세부사업의 추진계획을 5년간의 추진일정과 소요 예산을 담은 재정계획을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고, 각 행정부서 또한 장단기 운영계획을 5년간의 추진일정과 연도별 소요 예산을 담은 재정계획을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li> <li>2. 비전2020 제2기 대학발전계획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향후 5년간 대학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담은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특성화 및 발전계획은 예산계획이 포함된 부서별 학과별 장기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었고, 대학은 특성화 및 발전계획에 기초하여 부서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기초로 대학의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기에, 대학의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근거한 세부추진과제별,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이며, 실행 가능한 재정계획임을 확인할 수 있음.</li> <li>3. 비전2020 제2기 대학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에 대한 2012년 1월 20일의 대학평의회 심의 회의록을 통해 대학평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비전2020 제2기 대학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을 심의한 대학 이사회의 2012년 6월 27일의 회의록을 통해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음이 확인됨.</li> <li>4. 대학 홈페이지, 학보, 입시요강, 학생수첩 등의 온·오프라인 매체와 교내 게시물(액자) 및 홍보물 등을 통해 대학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을 충분히 공표시키고 있으며, 대학 홈페이지와 인트라넷을 통해 특성화 및 대학발전계획 자료집이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있음.</li> </ol>	
<p style="text-align: center;">특성화 및 발전계획</p>	<p>■ 1.2.2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매년 대학 전체의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성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 보고하고 있고, 각 학과에서는 매년 2월에 대학발전계획 수립 시 설정한 학과별 발전방안 영역별 성과지표에 대한 연차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실에 제출하고 있으며, 각 행정부서에서는 매년 2월에 대학발전계획 수립 시 설정한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한 연차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실에 제출하고 있고, 평가실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학과별 및 행정부서별 성과지표 평가 종합결과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므로,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 달성을 위한 점검·평가 체제가 구축되어 있음.</li> <li>2. 년 단위 평가계획에 따라 각 행정부서와 학과는 비전2020 대학발전계획 제2기에서 수립한 장단기발전계획에 따라 2013년과 2014년의 성과지표 평가를 바탕으로 각각 2014년 3월과 2015년 3월에 추진계획별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2015년 2월과 2016년 2월에 이를 평가하였고, 평가실 주관 하에 대학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3차년도(2014년)와 4차년도(2015년) 대학발전계획의 7대 부문별 추진과제에 대한 부문별 평가 및 특성화 평가를 수행하였기에, 정기적인 점검 평가 이행여부가 확인됨.</li> <li>3. 대학자체평가위원회를 주관하는 평가실은 비전 2020 대학발전계획(7대 추진과제) 및 특성화에 대한 3차년도 및 4차년도 성과평가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체 학과 및 행정부서에게 게시물에 대한 열람 협조전을 발송하여 전 구성원에게 인지도시켰기에, 평가결과가 전 구성원에게 공유되고 있음이 확인됨. 3차년도(2014년)에 미충족으로 판정되어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되었던 항목들 중 '여성 CEO 리더십 교육 개발', '기숙사 건립 공사'는 입찰공고를 내고 추진 중에 있기에 4차년도(2015년)에 환류개선과제로 시행되어 충족 판정을 받았음. 이상과 같이 교육 및 대학운영 전반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으므로 충족 판정함.</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충족</p>

## 기준2. 교육과정

세부기준	평가 및 분석결과	평가
<p>2.1 교육과정의 질 보장</p>	<p>■ 2.1.1 교육과정 정책</p> <p>1. 학령인구 감소, 산업현장의 급속한 기술변화, 학습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성향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교육 품질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전공심화과정[2014년 1개 학과(사회복지과), 2015년 4개 학과(전기공학과, 사회복지학과, 자동차공학과, 글로벌한식조리과)], 산업체위탁교육[2014년 3개 학과(사회복지과, 전기과, 산업경영과), 2015년 2개 학과(산업경영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공학인증제(환경보건과) 등과 같은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 운영한 실적이 있음.</p> <p>2. 대학은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정책에 의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4,3,2년제 교육과정 연구개발 지침’, ‘NCS 기반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지침’을 설정하고, 학과는 대학의 사명, 교육목표(학과별 교육과정 연구개발 보고서 제1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2014년에는 3개 학과(2015학년도 교육과정), 2015년에는 교양과 포함 33개 학과가 교육과정(2016학년도 교육과정)을 개발함. 학과는 교육과정 수립 시 ‘교과과정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회’로 부터 적합성 심의와 자문을 받고 대학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2014년, 2015년 각각 3,000천원, 33,000천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음.</p> <p>3. 대학은 ‘대학홈페이지(대학소개)’와 ‘학칙’ 제1조(목적), 제1조의 2(교육목표)에서 제시된 수원과학대학교의 사명(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 시 ‘대학 포털시스템 인트라넷’을 통해 준수하도록 공지하고 있으며 학과별 ‘교육과정 연구개발 보고서’ 제1장에 학과의 교육목표가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와 일관성 및 연계성을 갖고 개발되었음을 확인하였음.</p> <p>4. ‘학과(전공)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 제3조(평가방법)에 의거 대학의 학과(전공) 학생 정원조정은 모든 학과(전공) 대상으로 당해년도 포함 신입생 총원율, 재학생 총원율, 취업률에 대한 3개년도 결과 값의 가중평균치 산정값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제5조(정원조정 및 학과신설, 통·폐합), 제6조(학과 및 전공 최소 정원), 제7조(학과 폐지 통합 등에 따른 교원 및 교직원 처리), 제8조(전공전환 신청) 규정과 ‘대학발전위원회’, ‘대학평의회’의 회의,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함.</p>	<p>충족</p>
	<p>■ 2.1.2 교육과정 개발</p> <p>1. 대학은 ‘교무위원회’를 통해 매년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교육과정 개발 또는 변경 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4,3,2년제 교육과정 연구개발 지침’, ‘NCS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설정함. 학과는 ‘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학과별 교육과정 연구개발 보고서 내 회의록 확인)’를 구성하여 최근 산업사회의 산업체 요구분석, 직종별 직무분석(NCS 분류체계)을 통한 학과 특성화 방안, 재학생·졸업생·산업체의 교육만족도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방안을 도출하여 학과에 적합한 ‘교육과정개발(안)’을 개발한 후 ‘교과과정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회’로 부터 정책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토·심의·평가·자문을 받아 ‘교육과정 연구개발 보고서’를 개발함.</p> <p>2. 대학은 교육만족도 조사와 강의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고, 학과는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환경 변화나 교육수요자의 요구 에 기반 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음을 확인함.</p> <p>3. ‘교과과정운영위원회’는 ‘교과과정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 개편 결정과 교과과정 개선에 대한 활동을, ‘교과과정심의위원회’는 ‘교과과정심의위원회</p>	<p>충족</p>

	<p>규정'에 의거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 개편내용의 적절성과 교과과정 심의에 대한 활동을, '대학평의원회'는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문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학과는 '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교육 목표와 정책(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음.</p> <p>4. 교육과정의 변경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기반을 두고 학과 직간접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교육과정개발위원회(학과)'로부터 도출된 인력양성유형과 학과의 교육목표가 일관성 있게 충족되어 개발되었는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음.</p> <p>5. 대학은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2014년, 2015년 각각 3,000천원, 33,000천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으므로 충족 판정함.</p>	
<p>2.2 전공 및 교양 교육</p>	<p>▲ 2.2.1 현장중심 전공교육</p> <p>1. 실습 및 이론 과목은 '학칙',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으며 2014년 1, 2학기 실습과목 시수 비율은 평균 50.2%, 2015년 1, 2학기 실습과목 시수 비율 평균은 48.6%로 적절히 편성 운영함.</p> <p>2.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학과(전공)는 학습목표 및 성취수준이 제시된 교육과정을 공지하고 매 학기 개강 전 교과목별 담당교수는 NCS 및 NCS 기반 교과목의 교과목명세서, 평가방법, 주별계획 등을 수원과학대학교 포털시스템 NCS학사운영시스템에, 비 NCS 교과목의 교과목소개, 강의개설목적, 강의운영방법, 학습평가방법, 주차별강의내용 등은 수원과학대학교 홈페이지 포털시스템의 종합정보시스템에 개강 전 학생들에게 공지 및 안내하고 있음.</p> <p>3. 대학 포털시스템의 종합정보시스템과 NCS학사운영시스템에 강의계획서와 교과목명세서 등이 학생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히 안내·공지되어 있음.</p> <p>4. 전공강좌 당 학생 수가 2014년 1, 2학기 각각 평균 32.2명, 29.6명이고 2015년 1, 2학기에는 각각 평균 30.6명, 28.1명으로, 인증평가 기준인 학기당 전공교과목의 강좌당 학생 수가 평균 33명 이하이므로 충족 판정함.</p>	<p>충족</p>
	<p>■ 2.2.2 직업기초 교양 및 기초학습 교육</p> <p>1. 대학의 교양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교육이념인 인격함양, 국가발전, 인류번영을 추구하는데 있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제시한 10개의 직업기초능력 영역에 부합한 교양강좌를 학과별 특성에 맞게 개설·운영하고 있음. 또한, 대학은 비전2020 7대 추진과제 중 국제화 및 글로벌 인재육성 계획에 부합되는 교양교육을 위해 중국어회화, 토익강좌, ESL과 원어민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음.</p> <p>2. 대학은 '교과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취업지원 운영 규정', '산학협력 운영 규정'에 의거 교양과, 취업지원처, 산학협력과에 의해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및 향상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실적이 존재함.</p> <p>3. 2015년에 11개 학과만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언어능력(국어, 867명)과 수리능력(수학, 786명)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미비하므로, 전교적 차원에서 기초학습능력 진단체계가 확립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어 보완 판정함.</p> <p>4. 대학은 2016학년도 교육과정개발에 있어서 교양강좌 교과과정 개편(개설·폐지) 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음.</p>	<p>보완</p>
<p>2.3 평생교육</p>	<p>■ 2.3.1 평생교육 운영 체제</p> <p>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행정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전담 인력의 배치 및 지원 여부를 평생교육원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에서 확인함. 평생교육원장(사회복지과 교수)을 비롯하여, 2014학년도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박상미 선생이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학년도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박주영, 이은경, 박석준 선생이 전담인</p>	<p>충족</p>

	<p>력으로 근무함.</p> <p>2. 평생교육원 전담인력은 평생교육원 업무분장을 준수하여 업무 적용을 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음.</p> <p>3. 전임교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전임교원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현황에서 2014학년도에는 4개학과(호텔조리과, 관광중국어과, 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과) 9명의 전임교원, 2015학년도에는 4개학과(글로벌한식조리과, 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과, 교양과) 11명의 전임교원이 참여하였음을 확인함.</p> <p>4.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평가 여부를 학점은행제 자체평가 보고서,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학점은행제 및 일반과정 강의평가 자료, 우수강사 표창 및 수여대장을 통해 확인함.</p>	
	<p>■ 2.3.2 학점인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관리</p> <p>1. 학점인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정규학위과정과 동등한 교육의 질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운영세칙, 시간제등록제 운영규정, 학사관리지침과 같은 엄정한 학사운영기준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함</p>	총족

### 기준3. 학사관리 및 교육성과

세부기준	평가 및 분석결과	평가
3.1 학사관리	<p>■ 3.1.1 학사관리 규정 및 준수</p> <p>1. 학사관리 관련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교무학사관리지침’은 수원과학대학교 대학 홈페이지의 대학규정집과 대학요람,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지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p> <p>2. 학사관리 관련 규정의 전문 및 변경사항은 수원과학대학교 인트라넷과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및 안내되어 있음. 대학 홈페이지에 제 규정들이 공지되어 있어 구성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접근 편리성을 확인하였음.</p>	총족
3.1 학사관리	<p>■ 3.1.2 수업관리</p> <p>1. 학칙시행세칙 34조에 의하여 출석부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있음. 출석관리 규정 및 지침 내용이 엄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출석부 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p> <p>2. ‘학칙’, ‘학칙 시행세칙’, ‘교무학사관리지침’에 의거 담당교수가 부득이 휴강 또는 결강하고자 할 경우 휴강 3일전 휴강사유 및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강계획서(대학 포털시스템에서 출력)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과장은 보강 계획에 의한 보강 실사여부를 필히 확인(대학 포털시스템에서 보강사실확인서 출력)하여 수업일수를 준수하고 있음.</p>	총족
3.1 학사관리	<p>▲ 3.1.3 학생선발</p> <p>1. 대학입시홈페이지 및 2015, 2016학년도 학생 모집 요강에서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선발 정책을 확인함. 2015학년도 학생모집 요강 및 2016학년도 학생모집 요강에서 학생선발 정책에 있어 차별 두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p> <p>2. 대학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입학전형기준을 대학입시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서 인지하여 공정하게 관리하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입학전형기준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함.</p> <p>3. 2014학년도 신입생 총원률은 100%, 2015학년도 신입생 총원률은 100%, 2016학년도 정원내 신입생 총원률은 100%로, 인증평가 기준인 신입생 총원률이 91% 이상임</p>	총족

	<p>을 확인함.</p> <p>4. 2014, 2015, 2016학년도 신입생모집 입학전형 결과보고서에서 학생 모집 전형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입학 정원 조정 및 학과 의견 수렴서를 통하여 평가 결과의 환류를 성과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p>	
	<p>▲ 3.1.4 학업 성취도 평가</p> <p>1. 교무학사관리지침 8번에서 A학점 비율을 3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학기별 A학점 분포비율은 2014년(1학기 29.5%, 2학기 27.0%)과 2015년(1학기 25.1%, 2학기 26.4%)에 평가기준 40.0% 이하를 유지하고 있음.</p> <p>2. 학칙시행세칙 44조 및 교무학사관리지침 8번에서 성적분포 및 평가 규정과 지침이 규정되어 있고, 성적평가 및 학점 인정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충족 판정함.</p> <p>3. 학생이 강좌를 통해 달성해야 할 학습목표나 성취(수행)수준은 대학 포털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정보강좌의 강의계획서(비 NCS 교과목)와 NCS학사운영시스템 NCS과정운영(NCS 및 NCS기반 교과목)의 교과목명세서, 학과 홈페이지, 교육과정 연구개발보고서 등에 공지 및 기술하고 있음. 교과목별 출석부에는 수강 전 교과목에 제시된 성취수준 및 평가 방법 세부 사항에 근거하여 작성된 성적산출 세부내역이 표기되어 있음. 또한, 학업 성취도 평가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제시된 성취수준과 내용, 평가기준, 방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p> <p>4. 성적정정은 담당교원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이루어지며, 성적정정 후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정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성적정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실시하고 있고, 이의제기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p>	충족
	<p>▲ 3.2.1 졸업생 취업률</p> <p>1.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취업률이 2014년 64.3%, 2015년 61.2%(예상)로 각각 집계되어 최근 2개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모두 인증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60% 이상에 해당하고 있음.</p> <p>2. 취업률 향상 및 취업능력 배양을 위해 취업관련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학생 상담 및 관리를 위해 학과별 취업담당교수제 및 취업담당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음.</p>	충족
3.2 교육성과	<p>■ 3.2.2 교육만족도</p> <p>1.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하며 2014년, 2015년 전공학과(32개 학과)에 협조전을 발송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p> <p>2. '대학 자체평가 규정' 제1조(목적), 제4조(평가영역)에 따라 객관성, 합리성, 타당성을 갖춰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과정개편 등의 실적이 있음.</p> <p>3. 교육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경영자 검토가 이루어 졌고 조사결과 환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함.</p>	충족
	<p>▲ 3.2.3 재학생 총원</p> <p>1. 재학생 총원율(=정원내 재학생 수/편제정원)은 2014년 92.5%, 2015년 90%이며, 평가기준 82%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p> <p>2. 재학생 총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함.</p>	충족
3.3 교수학습 지원	<p>■ 3.3.1 교수학습 지원 체제</p> <p>1. 교수학습지원을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설치목적과 업무, 조직,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규정과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p>	충족

	<p>로 센터장 1명과 전담직원 2명으로 구성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센터장 포함 7인의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기에, 교수학습지원 조직과 전담인력이 있음이 확인됨.</p> <p>2.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수요자 의견조사를 2014년 11월과, 2015년 11월에 실시하고 이를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였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법특강에 대한 수요자 의견조사를 2015년 8월에 실시하여 시행하여 학습법 특강시행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교수,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교수학습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됨.</p>	
	<p>■ 3.3.2 교수학습 지원활동 평가 및 개선</p> <p>1. 교무과의 주관 하에, 매 학기말 학생들이 수강한 모든 과목의 성적을 열람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강의 평가를 하도록 하는 강의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p> <p>2. 개인별 강의 평가의 결과는 교원의 업적평정에 큰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로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음 학기 강의 준비와 시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기에,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이 확인됨.</p> <p>3.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시행 후 반드시 사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평가를 수행하여 교수학습지원계획 시행에 대한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p>	총족

#### 기준4. 산학협력

세부기준	평가 및 분석결과	평가
4.1 산학협력 교육활동	<p>■ 4.1.1 산학협력활동 지원체제</p> <p>1.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 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였음.</p> <p>2. 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산학협력 운영규정, 현장실습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음. 산학협력 전담 및 협조 부서에 대한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분담·정의하기 위하여 사무분장 규정을 마련하고 산학협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 및 지원하고 있음.</p> <p>3. 산학협력처는 매년 산학협력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직전연도 산학협력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간 산학협력 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일정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p>	총족
	<p>■ 4.1.2 산학협력활동 평가 및 개선</p> <p>1. 산학협력처는 매년 산학협력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직전연도 산학협력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4년, 2015년 산학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일정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산학협력 계획에 대한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세부사업에 대한 목표치 설정, 개선 보완점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차기연도 관련 개선을 위한 산학협력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p>	총족
4.2 취·창업지 원 활동	<p>■ 4.2.1 취·창업지원체제</p> <p>1. 학생의 진로 개발과 취업을 및 취업의 질 향상을 위해 취·창업지원 전담부서인 취업지원처가 있으며, 협조부서인 산학협력처, 국제협력처, 각 학과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음.</p> <p>2. 취업지원처는 학생의 취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계획 및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고와 교비로부터 예산을 책정하여 재정적으로</p>	총족

	<p>지원하고 있음.</p> <p>■ 4.2.2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계획과 평가</p> <p>1. 취업지원처는 연간 취업지원 계획에 따른 세부사업의 진행 및 운영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또는 차기연도 초에 취업지원 계획대비 시행여부 평가와 함께 매년 산학협력위원회에서 운영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p> <p>2.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산학협력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취업지원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운영성과 평가를 산학협력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취·창업지원 계획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p>	총족
4.3 현장실습	<p>▲ 4.3.1 현장실습교육 지원체제</p> <p>1. 현장실습 교류업체당 재학생 수는 2014년 8.6명, 2015년 8.1명으로 각각 산출되어 최근 2개년도 모두 인증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13명 이하에 해당함.</p> <p>2.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현장실습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규정이 수립되어 있으며,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2014년 현장실습 운영규정과 학과별 현장실습 지침서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p> <p>3. 체계적인 현장실습 관리와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2016년 3월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장실습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현장실습 순회지도 출장비 지급, 현장실습 관련 교원업적평정 반영 등을 시행하고 있음.</p> <p>4.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현장실습 산업체의 선정)에 전공학과와 관련이 있는 산업체로 명시되어 있으며,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시 학과의 교육목표를 명시하여 이에 부합되는 산업체를 발굴 및 배정하도록 하였음.</p>	총족
	<p>■ 4.3.2 현장실습교육 평가 및 개선</p> <p>1. 현장실습교육의 문제점 개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장실습 종료시 모든 학생 및 산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분석하고 있음.</p> <p>2. 현장실습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도출된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2014년 가족회사 확대와 실무중심교육 지향, 2015년 NCS체제 교육과정 개편과 현장실습 준비 및 사전교육 강화 등이 있으며, 현재 현장실습 계획 및 운영 시에 반영되어 개선·시행되고 있음.</p> <p>3. 현장실습 운영결과 평가시 전년대비 개선사항 및 학생요구 달성도를 분석하여 당해연도 개선실적을 제시하고, 실습생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차기연도 개선사항을 도출하도록 하였음.</p>	총족

## 기준5. 학생 및 도서관

세부기준	평가 및 분석결과	평가
5.1 학생지원 및 상담	<p>■ 5.1.1 학생지원 체제 및 안전관리</p> <p>1. 학생 지원조직으로 학생복지과,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또한, 총학생회 요구사항 건의공문, 총학생회 간담회, 교육만족도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지원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학생생활·복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차기연도 연간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p> <p>2. 학생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과 관련한 학생지원서비스 규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상과 같이 대학은 학생지원 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p>	총족

	<p>결과를 점검하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p> <p>3. 대학은 학생행사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이 학생준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2014년 세월호 사고 등의 사고발생에 따른 교육부의 안전대책이 강화되어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확보 매뉴얼을 주요행사에 대한 계획수립에 활용하고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p>	
	<p>■ 5.1.2 학생자치 활동</p> <p>1. 대학은 총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정책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학생지원서비스 규정, 총학생회 회칙, 동아리 등록과 운영에 관한 내규에 명시하고 있음.</p> <p>2. 대학은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마추제, 학생회 임원 공로 장학금, 취업(전공)동아리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p>	충족
	<p>■ 5.1.3 언론활동의 보장</p> <p>1. 학생들의 언론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방송국 규정과 학보사 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재정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p> <p>2. 교육방송국은 수시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보완하며, 년 1회 교내방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개선하고 있음. 학보사도 년 1회 학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보에 게재하고 편집회의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선점을 논의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p>	충족
	<p>■ 5.1.4 상담 및 대학생활 정보 제공</p> <p>1. 학생의 학업활동, 진로설정, 경력개발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필요시 해당 부서 담당자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학과는 필요시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공지하도록 하고 있음. 학생에 대한 학습과 진로지도 체제는 학생상담센터, 취업상담실, 학과별 취업 전담교수제, 지도교수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p> <p>2. 학생상담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자격을 소지한 상담사의 학생상담 관련자격 및 임무에 대해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음. 또한,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상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상담체제를 운영하고 있음.</p> <p>3.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학생상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자 상담 및 프로그램 종결 후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차기년도 학생상담센터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p>	충족
5.2 학생복지 지원	<p>▲ 5.2.1 복지지원</p> <p>1. 다양한 복지정책 개발과 시행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학생회 간담회, 총학생회 요구사항 건의공문, 교육만족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생활·복지위원회에서 평가함으로써 차기년도 학생지원서비스 업무 연간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총학생회 요구사항 건의공문, 총학생회 간담회, 교육만족도조사 등 학생의견을 반영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함.</p> <p>2. 구성원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보건소에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보건소 규정에 따른 운영을 하고 있음. 보건소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별도의 전담인력 1인을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 3공학관 1층에 위치함.</p> <p>3. 우수인재와 학생의 역량개발,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양한 장학제도를 도입하여 장학규정에 따른 운영을 하고 있음. 외부 장학금 유치를 위하여 부서별/학과별로 산학협력을 통한 유치노력을 하고 있으며, 매년 학과별로 외부장학금 유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한 유치실적이 있음.</p> <p>4. 2013년 등록금 수입총액 35,861,622천원에 대한 교내장학금 지급액은 4,998,312천</p>	충족

	<p>원으로 13.9%, 2014년 등록금 수입총액 36,339,762천원에 대한 교내장학금 지급액은 5,146,281천원으로 14.2%이며 이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 1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p> <p>■ 5.2.2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 지원</p> <p>1. 장애학생 지원규정 및 장학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지원, 장학지원을 하였으며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타 프로그램을 실시함. 다문화가족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경우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지원 및 기타 프로그램 실시함.</p> <p>2. 장애학생에 대한 정보제공은 매 학기 초 학교 홈페이지 장애학생 지원센터 안내, 개별 면담 시 팸플릿 제공, 학과(학과별 교수대상 장애학생 주지사항 안내) 및 타부서 협조전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 다문화가족 학생(외국인학생 포함)에 대한 정보제공은 외국인유학생 모집안내와 교환학생 O.T 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른 기타 프로그램 실시함.</p>	총족
5.3 도서관	<p>▲ 5.3.1 도서관 지원 체제</p> <p>1. 도서관은 전문인력 2명을 중심으로 총4명이 사서(수서, 정리, 서무)와 열람(대출, 멀티미디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인증원에서 제시하는 준사서 이상 인력의 1명 이상 확보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또한 도서관 직원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직무와 관련된 재교육 및 연수에 참가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도서관이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대학 규모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여 운영함.</p> <p>2.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는 2013년 27,000원, 2014년 26,400원, 2015년 32,800원을 각각 집행하여 최근 3개년도 모두 인증평가 기준인 21,600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충족 판정함.</p> <p>3. 도서관은 안정된 운영과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8년까지 연차별 도서관 장기 운영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매년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도서관 장서확충, 도서관 정보화개선, 도서관 환경개선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음.</p>	총족
	<p>■ 5.3.2 도서관 지원 평가 및 개선</p> <p>1. 도서관은 2013년 실시된 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도서소독기 설치, 2014년 실시된 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전용석 설치, 2015년 실시된 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멀티미디어실 컴퓨터(62대) 교체 등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였음. 상기와 같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갖추어 주기적 평가와 평가결과를 활용한 지속적 개선을 하고 있음.</p> <p>2. 도서관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를 정기적 또는 필요시 홈페이지 공지, 신입생 대상 도서관 이용 설명회 개최 및 학과별 방문 행사, 학보를 통한 홍보, 문화행사 개최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음.</p>	총족

## 기준6. 교원

세부기준	평가 및 분석결과	평가
6.1 교원의 선발과 평가	<p>■ 6.1.1 교원의 임면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p> <p>1. 교원의 채용, 재임용, 승진, 해임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득하고 있으며, 정교수 승진심사를 위해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절차·방법 및 평가기준을 교원인사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또한, 이에 대한 내용을 교수신규임용 관련철과 승진·재임용 관련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p> <p>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제4항에 의거하여,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할 시,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을 본 대학 소속이 아닌 자로 정</p>	총족

	<p>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교수신규임용 관련철을 통하여 확인하였음.</p> <p>3. 교원인사위원회는 교무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총장의 임명에 의해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본 위원회는 보직교수 2인, 비보직교수 5인으로 구성 안배하였으며, 직급별로는 교수 4인, 부교수 2인, 조교수 1인으로 안배를 하였음. 또한, 계열별로는 보건계열 2명, 공업계열 4명, 사회실무계열 1명으로 안배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 4명, 여자 3명으로 안배되고 있음.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p>	
	<p>▲ 6.1.2 교원의 확보</p> <p>1. 정보공시 6-나에 의거하여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4년 52.9%, 2015년 55.2%로써 인 증원 제시 50.0%를 상회하여 적정수준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총족 판정함.</p>	총족
	<p>■ 6.1.3 교원평가</p> <p>1.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조(목적), 제4조(업적의 구분),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에 의해 평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영역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당해 교원의 승진, 승급, 재임용(계약제 포함) 및 각종 포상에 활용하여 교원평가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하였음.</p> <p>2. 교원평가 시 직업교육 관련 활동으로 실습지도(현장실습참여), 취업지도, 기술개발(기업부설연구소 유치, 교원창업, 기술이전, 특허등록, 기술·경영 자문 등), 산학협력(가족 회사 유치, 산업체겸임교원 임용,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총 족 판정함.</p>	총족
	<p>■ 6.1.4 비전임 교원의 적합성</p> <p>1. 비전임 교원의 채용시 담당교과와 학위 또는 실무 경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 기준 으로 겸임교원 규정, 초빙교원규정, 시간강사위촉 규정 등에서 관련 임용규정을 제시 하고 있으며, 각 규정별로 비전임교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p> <p>2. 겸임교원은 임용기간 1년 단위로 관련 규정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겸임교원 임용관 련 자료와 심의 회의록을 통해 채용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p>	총족
6.2 교원의 활동	<p>■ 6.2.1 교원 역량 개발</p> <p>1. 교원 산업체 연구학기에 관한 규정 제4조(신청자격), 제7조(신청 및 선정절차)에 의거 2014년 1학기 1명(교양과 김태균), 2학기 1명(공연연기과 박재완), 2015학년 1학기 1명(전자과 이상준)이 참여하였고, 제10조(연구학기 교원의 의무)에 따른 시행 결과 실 적이 있음.</p> <p>2. 단기연수 프로그램으로 2014년 하계(김은경 외 44명, 4,500천원 지원), 동계(오진환 외 21명, 2,200천원 지원), 2015년 하계(박명식 외 32명, 3,300천원 지원), 동계(오진환 외 12명, 1,300천원 지원) 교원산업체 현장연수를 운영하였고 교원산업체 현장 연수 계획 수립 협조건, 계획서, 소요예산, 결과보고서 및 연수확인서(수료증, 이수증) 를 확인함.</p>	총족
	<p>▲ 6.2.2 교육활동</p> <p>1. 대학은 주당 평균 수업시간이 2014년 1, 2학기 각각 12.0시간, 12.0시간, 2015년 1, 2학기 각각 12.0시간, 12.1시간으로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인증평가 기준인 평 균 12.8시간 이하로 실시하였으므로 총족 판정함.</p> <p>2. ‘교무학사관리지침’과 ‘전임교원 수업 시간 편성 관련 협조건’을 준수하여 2014학년도, 2015학년도 학기별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12.8시간 이하로 실시하였음.</p>	총족
	<p>▲ 6.2.3 연구</p> <p>1. 2014년, 2015년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정보공시 7-가 자료)이 각각 0.54건, 0.44 건으로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수 인증평가 기준인 0.2건 이상이므로 총족 판정함.</p> <p>2. 교원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적 여건 및 성과 보상에 대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 으며, 주요 관련 규정으로는 ‘교원업적심사위원회 규정’ ‘교원포상위원회 규정’ ‘연구비</p>	총족

	<p>관리 규정'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보수 규정' 등이 있음.</p> <p>3. 교원의 연구 수행성과에 대한 보상 실적으로 2014년과 2015년 우수학과 및 성과향상 학과에 대한 포상에 각각 40,000천원 지급, 2014년과 2015년 교원업적평가 분야별 우수자 포상 및 표창(연구부분 개인우수자), 2014년과 2015년 산학협력 성과 포상금으로 각각 34,000천원, 11,300천원 지급 실적이 있음.</p>	
--	---	--

## 기준7. 경영 및 재정

세부기준	평가 및 분석결과	평가
	<p>■ 7.1.1 대학의 조직과 운영</p> <p>1. 대학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을 고운학원 정관 제 97조(하부조직), 학칙 51조(직제)에 규정하고 있으며, 구성 기구들을 조직도를 통해 확인하였음. 또한, 대학 내 조직은 사무분장 규정을 통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일치 여부를 각 부서의 기안서류 및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였음.</p> <p>2. 대학의 문서작성 요령, 처리절차 및 통제와 그 보관, 보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문서 규정을 보유함. 각 행정부서는 문서의 작성일자, 문서번호, 문서제목 등의 내용들이 포함된 문서관리대장을 보유함. 또한 모든 공식문서에는 문서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p> <p>3.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규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정함. 또한 규정 심의이전에 홈페이지 공시 등의 의견수렴 과정 절차가 있으며, 이러한 절차대로 제규정의 제정, 개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규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하였음.</p>	총족
7.1 리더쉽과 행정관리	<p>■ 7.1.2 총장의 리더쉽</p> <p>1. 총장은 교육환경 변화와 구성원 역량을 결집하여 내실있는 성장을 이루고자 비전 2020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Localization),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Globalization)의 비전을 수립하여, 명실 공히 최고의 대학 실현을 위한 7대 부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p> <p>2. 비전 2020 대학발전계획을 전 구성원이 공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유 노력을 하고 있음. 비전 선언문과 발전계획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상에서는 각 건물에 게시, 입시 모집요강에 게재, 학생 수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표하여 전 구성원이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있음.</p>	총족
	<p>■ 7.1.3 의사결정구조</p> <p>1. 대학내 법정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대학평의원회(직제 규정)) 및 각종 제 위원회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함. 또한, 대학의 제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학칙 혹은 각종 규정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각 위원회는 규정을 준수하여 조직구성, 회의 소집,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제위원회 명부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음.</p> <p>2. 대학 내 다양한 교수·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방법이 있으며, 절차는 학교 내 홈페이지 교수·직원 의견제안서 양식 탑재 → 교직원 의견제안서 작성 → 평가실 제출 → 행정 처과장 회의에서 논의 → 시행여부 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짐. 또한, 각 건물마다 건의함을 설치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음</p>	총족
7.2 인사 및 복지	<p>■ 7.2.1 직원 인사관리</p> <p>1.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2014년 62.3명, 2015년 63.9명임. 1년 이상의 계약 용역직을 포함하면 2014년 33.6명, 2015년 33.8명임.</p>	총족

	<p>2. 대학은 일반직원인사규정에 직원의 채용, 인사평가 및 승진,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일반직원인사위원회 규정,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직원인사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직원 인사 관련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p>	
	<p>▲ 7.2.2 교원 및 직원의 처우 및 복지</p> <p>1. 등록금 수입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은 2013년 27.8%, 2014년 28.5%로써 인증원 기준 30%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직원 인건비를 합산하였을 경우 2013년 44.5%, 2014년 46.1%로써 인증평가 기준 41% 이상임.</p> <p>2. 등록금 수입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은 2013년 16.6%, 2014년 17.5%로써 인증평가 기준 11% 이상임.</p> <p>3. 교직원 복무 규정(제8장)에 직원의 직무역량 계발을 위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직원 포상규정에서 교직원의 기여도를 고려한 보상제도가 규정되어있음. 대학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직원들의 직무역량계발을 위한 교육 지원비 및 출장 비용으로 2014년 23,943천원, 2015년 63,336천원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하였음.</p> <p>4. 교직원 복무규정에 교직원의 복지를 위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2014년, 2015년 교직원 주요복지 내용으로 명예교수 제도 운영, 교직원 단체 보험 가입 및 각종 경조사 지원, 연구학기제 운영, 각종 동호회 활동지원, 교직원 자녀 학자금지원 등이 있으며, 해당 복지내용에 대한 규정 준수여부를 지원 및 지급 내역서를 통해 확인함.</p>	<p>충족</p>
	<p>■ 장단기 재정운영계획</p> <p>1. 대학은 비전 2020 대학발전 계획에 따라 2012-2017 장단기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p> <p>2.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관련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 제외)의 대학운영경비의 총당율은 2013년도 2,868.5%, 2014년도에는 542.6%로 평가 기준치인 80%를 크게 상회하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p>	<p>충족</p>
<p>7.3 재정계획과 운영관리</p>	<p>■ 연간 예산계획 수립 및 결산</p> <p>1. 대학은 비전 2020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추진을 위해 7대 발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7대 발전계획의 실현을 위한 장단기 재정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학은 연간 예산계획을 수립하므로 상호 연계성이 존재함.</p> <p>2. 대학은 연간 예산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서에 전달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서별 시행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제출된 부서별 시행 예산서는 예산편성 관련 부서장 회의 및 예·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대학평의회 심의를 실시함. 심의가 완료된 예산 계획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예산안으로 확정됨.</p> <p>3. 대학의 연간 예산수립 및 결산은 제시된 관련법규(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음.</p> <p>4. 대학은 등록금 산정시 등록금 산정 세부 내역인 세출예산총괄과 산출근거, 세입예산총괄과 산출근거, 세출재원 대비 세입 재원 부족액, 등록금 책정 결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록금을 산정하게 되며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등록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시키고 있음.</p> <p>5.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각각 독립된 부서에서 시행 운영하고 있음. 예산편성 업무는 경영지원실에서 담당하고 예산집행 업무는 경리과에서 실시하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음.</p>	<p>충족</p>
	<p>■ 재정지원의 다양성</p> <p>1. 대학은 2014년도, 2015년도 등록금을 동결하였고 등록금에 편향되어 있는 단순한 재원구조 전환 및 대학 재원 다양화를 위하여 재원확보 노력을 하고 있음.</p> <p>2. 대학은 재정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기부금 (2014년 218,599천원, 2015년 248,970천</p>	<p>충족</p>

	원),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2014년 64,364천원, 2015년 68,000천원), 경상비 전입금(2014년 21,300천원, 2015년 29,000천원), 법정부담전입금(2014년 105,000천원, 2015년 150,000천원)등의 재정지원 확보 실적이 있음.	
7.4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p>▲ 교육비의 환원</p> <p>1. 2013년, 2014년의 교육비 환원율은 각각 111.82%, 103.61%로, 이는 평가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100%이상을 유지하고 있음.</p>	충족
	<p>■ 재정운영의 적절성</p> <p>1. 대학은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 제 20조의 따라 예산집행과 관련된 규정이 수립되어 있으며, 관련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을 실행하고 있고, 2013년, 2014년 추경예산 편성이전에 관에 해당하는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없음.</p> <p>2. 대학은 사립학교법 제 32조의 3에 따른 교육부 “사립(전문)대학 이월금처리규정에 따라 이월금 구분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입력을 통해 내용을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p> <p>3. 대학은 이월금 처리규정 사립학교법 제32조의 3(이월금) 처리규정에 따라 관련 법규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타당하게 수행하였음.</p> <p>4.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예산대비 결산 평가를 실시하며 예·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당해 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기연도 예산 계획에 반영하는 개선체계 및 실적을 확인함.</p>	충족
	<p>■ 감사제도</p> <p>1. 대학은 “내부감사규정”을 제정하여 각 부서별 행정업무의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업무개선을 위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감사와 함께 매년 외부회계법인(선진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2013년도,2014년도,2015년도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음.</p> <p>2. 내부감사보고서와 외부감사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음.</p>	충족

## 기준8. 물적·기술적 자원

세부기준	평가 및 분석결과	평가
8.1 물적자원 계획과 평가	<p>■ 8.1.1 물적자원 계획</p> <p>1. 대학은 예산편성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안) 편성계획을 수립하고, 편성된 예산에 따라 예산 배정계획서와 학과별 교육시설 지원(확보)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도별 시행을 하고 있음.</p> <p>2. 대학의 재정운영에 관련된 계획은 교육목표와 비전의 구체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근거로 하여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서(2012~2017년)에 수립되어있음.</p> <p>3. 연간 기자재 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및 의견 반영을 위해 매년 차년도 학과별 기자재 예산요구서가 작성되며, 각 부서별로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포함하는 시행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간 예산 수립에 우선 반영하고 있음.</p>	충족
	<p>■ 8.1.2 물적자원 평가 및 개선</p> <p>1. 대학은 교육시설 및 기자재에 관한 성과평가 지침에 의거 매회계년도 교육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성과평가 조사보고서와 정보자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음.</p>	충족
8.2 교육 및	<p>▲ 8.2.1 교육 및 복지시설의 확보 및 유지</p> <p>1. 2014년 교사확보율은 입학생 기준으로 114.1%, 재학생 기준으로 115.7%이며, 2015</p>	충족

	<p>년 입학생 기준으로 120%, 재학생 기준으로 124.7%의 교사시설을 확보하여 기준 100%를 초과하므로 충족 판정함.</p> <p>2. 대학은 복지시설로 휴게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보건시설 등을 다양하게 갖추어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유지되고 있음.</p> <p>3. 대학은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시설로 보건소 및 상담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음. 보건소는 학생의 응급상황을 비롯하여 신체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상담센터는 학생의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소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학생상담센터 내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개인 심리상담 시 사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p> <p>4. 대학은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적절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전담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p> <p>5. 교육시설의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시설물관리규정”, “시설물사용에 관한 규정”, “전기안전관리규정”, “방화관리규정” 등의 규정을 보유하고 있음. 대학 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관리대장”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 관리책임자가 상시 해당 교육시설 상태를 파악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음.</p>	
지원시설	<p>■ 8.2.2 정보전산시스템 지원 및 운영</p> <p>1. 정보전산지원 조직은 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정된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계산소장과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2명 및 일반행정직 1명의 전담인력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정보전산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중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외부 용역인력 2명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음.</p> <p>2. 전자계산소는 정보전산시스템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와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분석하여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음.</p> <p>3. 전자계산소는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2015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였음. 또한 전자계산소는 당해연도 말 또는 차기연도 초에 사업계획 대비 시행여부 평가와 함께 정보화위원회 및 정보보안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운영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p>	충족
	<p>■ 8.2.3 정보보안 체계</p> <p>1. 대학은 학생 및 교원,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관리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회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p> <p>2. 화재, 해킹 등으로부터의 학사정보 보호를 위해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웹방화벽 등 시스템 보안과 서버 암호화, 네트워크 암호화 등 데이터 보안을 동시 구축하고 있으며, 시스템 백업과 데이터 백업을 동시 가동하여 관리하고 있음.</p> <p>3. 대학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을 자율진단하기 위해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 제73조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에 의거하여 매년 정보보안 수준진단과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있음.</p>	충족
8.3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	<p>▲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p> <p>1.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2013년 169천원, 2014년 202천원, 2015년 169천원으로 인증평가 기준 157천원 이상이므로 충족 판정함.</p> <p>2. 산학협력처 운영규정, 실험실습비 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예산편성 운영규정에서 실험실습 기자재 및 실습재료의 신청절차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p>	충족

	<p>있음.</p> <p>3. 대학은 2015년 현재 총 1,678여종의 다양한 실험실습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음. 교수당 기자재 종수는 10.1개이며, 교수당 기자재 금액은 약 137,671천원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자재의 우선적 확보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충족 판정함.</p>	
	<p>■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관리</p> <p>1.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를 관리,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처 운영규정, 실험실습비 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음.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기자재 관리카드, 소모품대장, 실험실습일지 등을 통하여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 등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p> <p>2. 매학기 시작전 기자재 사전점검 및 고장시 즉시 수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학기 종료 시 바코드를 이용한 재물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자재가 교수·학습에 상시 활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음.</p>	충족

### 기준9.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세부기준	평가 및 분석결과	평가
9.1 대학의 책무	<p>■ 9.1.1 대학의 윤리적 책무</p> <p>1. 대학은 구성원들이 교육이념 구현 및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근본지침으로 삼기위해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을 제정함. 대학은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을 홈페이지 및 학보에 공표하여 실천하고 있음.</p> <p>2. 대학은 각종 윤리규정 및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윤리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내부·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구성원의 신뢰를 얻어 대학의 윤리적 책무를 다하고 있음.</p> <p>■ 9.1.2 대학의 사회적 책무</p> <p>1. 대학, 교직원 학생의 사회활동 문화를 정립·확산하고 사회봉사활동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수원과대학교 자원봉사단 운영 규정 및 학생동아리 봉사활동 학칙(제8장 학생활동)을 정의하고, 전담부서(학생복지처)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매학기 교직원 및 학과를 포함하는 사회봉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사회봉사활동 계획서 및 계획 현황표를 통하여 확인하였음.</p> <p>2.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사회봉사 실적을 반영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학생복지처에서 주관하여 학과별 사회봉사활동과 교직원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실적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음.</p>	충족
9.2 교육품질의 지속적 개선	<p>■ 9.2.1 교육품질의 평가체제</p> <p>1. 대학은 대학자체평가를 비롯하여 교육만족도 조사실시, 학과 및 행정부서의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대학발전계획에 대한 주기적 평가 등을 시행하여 대학의 교육 품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지표관리와 지속적인 PDCA를 통한 대학의 CQI 활동을 체계화하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평가실 조직도와 업무분장표를 통해 확인하였음</p> <p>2.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 대학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 평가하고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에 활용하는 내용 등을 정한 대학 자체평가규정이 존재함. 또한, 자체평가 운영규정에 따라 2014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공시하였으며, 2014년 자체평가는 총 37개의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p> <p>3. 대학은 기관인증과 관련한 평가지표들에 대해 학과 및 행정부서의 자체평가와 연결하여 매년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평가지표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인증</p>	충족

	<p>평가 지표들을 관리, 개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p> <p>4. 각 학과 및 행정부서는 교육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매년 초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매년 말 각 학과 및 행정부서별 성과지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개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p>	
	<p>■ 9.2.2 교육품질의 평가 및 개선</p> <p>1. 매년 자체평가가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구성원 전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육품질의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교육만족도 조사 회의록 및 기관인증평가 준비 안내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였음.</p> <p>2.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열람 협조문 발송(학과 및 행정부서) 및 각종 회의(행정처과장 회의, 학과장 회의 등)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있음.</p> <p>3. 자체평가 결과는 자체평가 절차에 따라 총장에게 보고 되었음. 교육만족도 조사는 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해당 부서에 평가결과가 전달되고, 해당부서에서는 개선점에 대해 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함. 또한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개선을 실시함</p>	총족

## 나. 정량적 정성평가 평가결과

평가요소	정량자료	기준	2013년	2014년	2015년	평가
현장중심 전공교육	전공강좌당 학생 수	33명 이하	30.5명	32.2명(1학기) 29.6명(2학기)	30.6명(1학기) 28.1명(2학기)	총족
학생선발	신입생 총원율	91% 이상	100%	100%	100%	총족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분포 비율	A학점 40.0%이하	27.7%	29.5%(1학기) 27.0%(2학기)	25.1%(1학기) 26.4%(2학기)	총족
졸업생 취업률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률	60% 이상	59.6% (55.6%이 상)	64.3%	61.2% (예상)	총족
재학생 총원	재학생 총원률	82% 이상	90.2%	92.5%	90.3%	총족
현장실습교육 지원체제	현장실습교류업 체당 재학생 수	13명 이하	8.6명	8.6명	8.1명	총족
복지지원	장학금 비율	10% 이상	13.9%	14.2%	14.4%	총족
도서관 지원체제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21.6천원 이상	27천원	26.4천원	32.8천원	총족
교원의 확보	전임교원 확보율	50% 이상	51.8%	52.9%	55.2%	총족
교육 활동	주당 수업시간	12.8시간 이하	12.1시간	12.0시간(1학기) 12.0시간(2학기)	12.0시간(1학기) 12.1시간(2학기)	총족
연구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0.2건 이상	0.5건	0.54건	0.44건	총족

교원 및 직원의 처우 및 복지	등록금 대비 전임교원 인건비 비율	질적평가	44.5%	46.1%	46.5%	충족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	질적평가	16.6%	17.5%	17.2%	충족
교육비의 환원	교육비 환원율	100% 이상	111.8%	103.6%	106.3%	충족
교육 및 복지시설의 확보 및 유지	교사확보율	100% 이상	116.6%	114.1%	120.0%	충족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	학생1인당 실험실습비	157천원 이상	169천원	202천원	169천원	충족

#### 다. 평가결과의 종합

우리대학의 4주기 자체평가는 기관인증 사후점검의 평가항목을 자체평가의 평가항목으로 같음함으로써 9개의 기준, 25개의 세부기준, 62개의 평가요소로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62개의 평가요소 중 보완(C) 판정된 '직업기초 교양 및 기초학습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61개의 평가요소를 충족(Y) 판정하였다. 평가요소 '직업기초 교양 및 기초학습 교육'은 2015년에 11개 학과만이 언어능력과 수리능력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였고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및 교육운영 실적이 미비하여,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진단체계가 전교적 차원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였기에 보완 판정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25개의 세부기준 중 평가요소 '직업기초 교양 및 기초학습 교육'이 속한 세부기준 '전공 및 교양 교육'은 보완(C) 판정하고, 나머지 24개의 세부기준은 충족(Y) 판정하였다. 그리고, 9개의 기준 중 보완 판정된 세부기준 '전공 및 교양 교육'이 속한 기준 '교육과정'은 보완(C) 판정하고, 나머지 8개 기준들은 충족(Y) 판정하였다.

정량적인 평가요소 중 4개의 필수 평가요소인 재학생 충원, 전임교원의 확보,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은 기관인증에서 요구하는 정량적인 수준을 만족하여 충족(Y) 판단하였다.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요소 중 11개의 일반 평가요소인 전공강좌 당 학생 수, 신입생 충원률, 성적분포 비율, 졸업생 취업율, 현장실습 교류업체 당 재학생 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주당 수업시간,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등록금 대비 전임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 비율, 교사 확보율,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기관인증에서 요구하는 정량적이면서 정성적 질적평가 수준을 만족하여 충족(Y) 판단하였다.

평가결과를 정리하면, 4주기 자체 평가결과는 대부분의 평가요소에서 양호한 충족 판정을 받았지만, 보완 판정을 받은 '직업기초 교양 및 기초학습 교육' 평가요소 분야에서 더욱 다양한 기초학습능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상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학위수준에 맞는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을 지원하려는 전교적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4.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4주기 자체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대학의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본교의 교육목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 1. 전문대학 기관인증평가 사후점검 대비 및 유지관리에 활용

기관인증평가 이전에 시행하는 자체 진단으로써 전문대학 기관인증평가 관련 평가요소들이 대부분 반영된 자체평가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향후 기관인증평가 사후 점검 평가 및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2. 수요자를 위한 정보공시 자료로 활용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기관 등 교육 수요자들에게 우리대학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대학의 신뢰도와 공신력을 제고시킨다.

##### 3. 대학 발전계획 비전2020에 대한 성과 평가에 활용

VISION 2020 대학발전계획의 추진 및 성과평가에 활용하고, 발전계획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각 부분에 대해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한다.